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0-1290호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 ·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0. 10. 22.

성 북 구 청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장위14구역 주변 구역해제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를 위한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한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공청회 개최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14:00
- 공청회 개최장소 : 제2월곡인조잔디구장(옥외)
-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안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대
- 면 적 : 144,201.0m²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요내용 : 장위14구역 주변 구역해제에 따른 구역계 정형화를 위한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

4.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0년 11월 05일까지 서면(우편, 팩스)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2인 이내)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
 - 주 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층)
 - 연 락 처 : 전화 02)2241-2832, 팩스 02)2241-6545
 - 신청서식 :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담당자 김재호 ☎2241-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안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위 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번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와 함께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 계획

■ 제 목 :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 일 시 : 2020. 11. 12.(목) 14:00

■ 장 소 : 제2월곡인조잔디구장(옥외)

※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논의내용 :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

■ 주 관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2

■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1.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0년 11월 05일까지 서면(우편, 팩스)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2인 이내)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여 신청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층)

○ 연 락 처 : 전화 02)2241-2832, FAX 02)2241-6545

○ 신청서식 :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2. 발표자로 참여하지 않는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주재자의 자명을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2.

성 북 구 청 장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 청 회 발 표 자 선 정 신 청 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
	신청자격	당사자,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종사자), 단체대표 (소속단체:), 기타
	주요경력 및 이 력	
	권리물건	
발 표 요 지		
신 청 자 주 의 사 항	① 공청회 발표자는 행정청(성북구청)에서 신청자중 2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②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 38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③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 주재자의 진행에 따라야 하며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발표자별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⑥ 기타 공청회와 관련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성 북 구 청 장 귀하